

과업내용서

1. 과업의 목적

본 과업은 인천국제공항 자원회수시설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반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규에 의거 폐기물이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, 환경에의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.

2. 용어의 정의

폐기물처리용역을 시행함에 인천공항시설관리 주식회사를 “발주처”라 하고 운반 및 처리업체를 “폐기물처리업체”라 한다.

3. 사업의 개요

용역명	2022년 인천국제공항 자원회수시설 발생폐기물 수집·운반 및 위탁처리용역
폐기물의 종류	바닥재(일반, 51-08-03)
폐기물 보관장소	인천국제공항 자원회수시설
처리방법	매립 또는 재활용
예상 발생량	1,400톤
1회 운반량	16톤/회

※ 바닥재 처리 선정업체의 책임하에 소각칠편 처리(제 3자 처리 가능)

- 130톤/년 발생 예상(소각칠편 처리단가 : 무상)

4. 용역기간

본 용역의 과업수행 기간은 '22. 1. 1부터 '22. 12. 31까지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

- 가. 당사의 방침으로 용역 기간이 변경되는 경우
- 나. 계약 종료일 이전에 계약된 물량을 모두 처리한 경우
- 다. 천재지변 또는 내우외환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경우
- 라. “가”내지 “다”호의 경우를 제외한 어떠한 경우라도 용역 기간을 펼히 준수하여야 한다.

5. 적용범위

- 가. 자원회수시설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반폐기물(바닥재) 운반 및 처리
- 나. 자원회수시설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각철편의 처리(제 3자 처리 가능)

6. 업무책임한계

- 가. 폐기물처리업체는 발주처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계약한 용역 업무를 성실히 능동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.
- 나. 본 용역은 폐기물관리법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.
- 다.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련법령 및 규정이 제·개정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.
- 라. 폐기물처리업체는 업무수행 중 불법행위,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반사고 등에 대하여 민·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.
- 마. 폐기물 처리 선정업체는 소각철편에 대한 처리의무를 가지며 보관용량 24m³ 이상의 소각철편 보관 BOX를 발주처에 제공하여야 한다.
- 바. 본 과업내용서 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에서 정한 담당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.
- 사. 폐기물처리업체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, 보험가입금액은 계약단가 및 예상 발생량을 기준으로 산정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.(단, 특례 적용시 특례를 따름)
- 아.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상의 구성원들 각각의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, 보험가입금액은 “사”항의 방법에 구성원 간 분담비율을 적용하여 각각 산정한다.

7. 과업내용

- 가. 사업장내 폐기물의 수집·운반 및 처리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 별표5의 규정에 따른다.

- 나. 폐기물처리업체는 폐기물 운반처리 시 등록된 폐기물수집·운반 전용차량으로 하여야 하며, 수집·운반 시 해당 지역의 청소 등 마무리 작업을 철저히 하여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다. 폐기물처리업체는 수탁받은 폐기물을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라. 폐기물처리업체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폐기물을 수집·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수·인계에 관한 전자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- 마. 폐기물처리업체는 폐기물의 적정처리 시 계량을 시행하여야 하며, 계량은 인천국제공항 자원회수시설에 설치된 계량대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부득이 한 경우 공인 계량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, 이때 계량비용은 폐기물처리업체가 부담한다.
- 바. 폐기물처리업체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58조에 의거 폐기물 수집·운반관리대장, 폐기물최종처리시설운영·관리대장, 폐기물재활용대장 등을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제출요구가 있을 시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사. 폐기물처리업체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서 규정하는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8. 용역수량의 증감

- 가. 본 용역의 예정수량은 추정량이므로 실제 수량은 증감될 수 있으며, 폐기물처리업체는 수량 증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.
- 나. 예정수량보다 초과하여 발생할 경우에는 예정수량을 초과하여 용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
9. 용역비 정산

본 용역은 처리폐기물에 대한 예상발생량을 기준으로 설계하였으므로 폐기물 위탁처리비는 발주처에서 확인한 증빙자료(발주처 계근표 등)에 의하여 실제 처리한 양에 따라 매월 정산한다.